

#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2. (조오순 의원 등 7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 
(2023. 12. 6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 (조오순 위원)

### 가. 제안사유

- 1) 화성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지원금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, 고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투자유치 기금의 설치 근거와 존속기한 기금의 용도 등에 대해 규정함.  
(안 제3조의2)
- 2)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지원금의 범위, 금액, 절차 등에 대해 정함.  
(안 제21조2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 유치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, 고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우수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다. 다만,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에 의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3조의 투자유치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례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2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 
(2023. 12. 6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 (오석만 농업정책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.
- 2) 특별회계 세입세출 용어 정비  
(현행 제4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안 제4조제1항제2호·제3호)
- 3) 채권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 규정 적용을 위해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 규정 삭제  
(안 제11조 및 제16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회계혼용을 방지하고, 상위법령에서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는 삭제함으로써 입법체계성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2. (배정수 의원 등 7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 
(2023. 12. 6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 (배정수 위원)

### 가. 제안사유

- 1)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을 설치하고, 대기질 개선 및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에 대해 열거함(안 제6조).
- 2)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
- 3)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.
- 4)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사업을 규정함(안 제10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 제정으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 시설 설치와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통해 대기질 환경개선과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2. (김영수 의원 등 7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 
(2023. 12. 6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 (김영수 위원)

### 가. 제안사유

- 1)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빗물 저장소 확보와 펌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지상 또는 지하에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
(안 제8조의2)
- 2) 저장된 빗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빗물 펌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
(안 제8조2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빗물 저장시설 및 펌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써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